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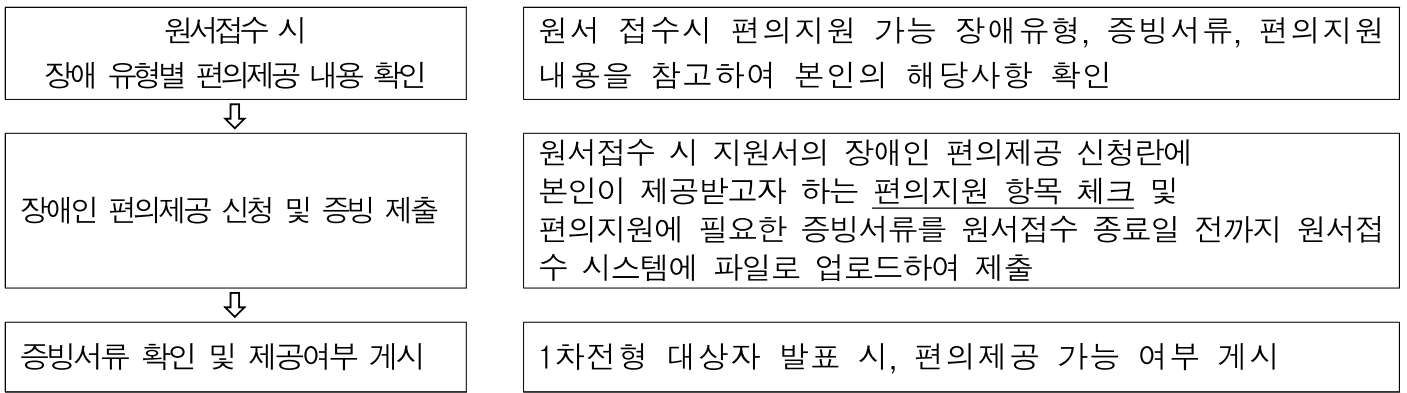
장애인 편의지원 제공 안내

*필기전형 시(신입직 및 지원직) 편의지원 내용은 이하 참고, 1차전형 이후의 편의제공은 별도 안내 예정

○ 편의지원 제공 대상

-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조에 의한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,
-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되어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된 자로서,
- 시각·지체·뇌병변·청각장애 등 외부 신체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

○ 편의지원 신청 절차



○ 편의지원 가능 장애유형, 증빙서류, 편의지원내용

유 형	신체적장애 > 외부기관의 장애 > 지체·뇌병변·시각·청각·언어·안면장애
증빙서류	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 3조1항에 따라 각호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장애유형별 해당 전문의가 발행한 장애진단서 ※ 진단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 (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: www.hira.or.kr 에서 지역별 병원 확인 가능)에서 원서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된 경우 유효
편의지원 내용	편의요청 내용을 선택하되, 복수 선택 가능 ① 저층 우선 배정(고사장 1층 배정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할 경우 배정) ② 개인소유 장애인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(증빙서류 상 장애와 관련 기구에 한함) ③ 답변마킹 보조 감독자 지원(고사장 별도 배정)